

<의안번호 제2008 - 8호>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2.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2. 26.

2. 제안이유

- 동남아시아의 영어권이자 세계적 벼품종개량연구소가 소재해 있는 필리핀(카르모나시)과 자매결연을 추진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원어민활용 용이, 어학연수 등 평생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재고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 자매결연을 통해 양군·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그동안 교류 상황
 - 카르모나시장 일행 거창군 방문 : 2007. 6. 16
 - 카르모나시에 실무협의 제안서 송부 : 2007. 6. 20

- 카르모나시장 실무협의단 초청 : 2007. 6. 26
- 실무협의단 방문 : 2007. 7. 9 ~ 7. 12
- 우호교류 협약체결 : 2007. 10. 25
- 거창중앙고등학교와 카르모나시 공립고등학교간 자매결연 : 2007. 12. 14
- 중학생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 학생 어학연수(16명) : 2008. 1. 3 ~ 1. 30
- 향후 추진계획
 - 2008. 4~5월경 자매결연 체결

4.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거창군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양 군·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 자매결연 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금번 교류대상 도시와는 그동안 꾸준히 상호 협력을 해오고 있는 등 집행부에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 작업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